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0 년 01 월 31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0 년 04 월 02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수익증권 [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UBS 자산운용

목 차

CONTENTS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요약정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붙임] 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 전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본문 중 전환에 관한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2 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일부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 후 5 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 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증가할 수 있음)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UBS 자산운용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0.01.31.

하나UBS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AP770]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핵심위험에 대해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하나UBS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서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수익률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추구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추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전환형
투자비용	클래스: 투자자가 부담하는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종류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345	0.800	1.44	138	283	435	762	1,7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895	0.350	0.96	92	188	289	507	1,154

*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및 구체적인 투자비용 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 투자시 부담하는 총비용 예시 :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19/03/17 ~ 2020/03/16	2018/03/17 ~ 2020/03/16	2017/03/17 ~ 2020/03/16	2015/03/17 ~ 2020/03/16	(%)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Class C	2014-03-17	-18.24	-18.44	-9.11	-5.67	-5.21
비교지수	2014-03-17	-21.14	-17.06	-7.26	-2.90	-1.86
수익률 변동성(%)	2014-03-17	21.03	17.31	16.10	14.59	13.82

* 비교지수 = KOSPI X 100%

*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C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 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혼합주식형_국내,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유지용	1968	부문장	16개	586억원	-3.04	-11.83	-2.96	-9.94	23.9년

* "책임운용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UBS 자산운용

<table>
<tr><td rowspan="7">주요투자
위험</td><td colspan="3">
<table>
<tr><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 내용</th></tr>
<tr><td>투자원본
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td></tr>
<tr><td>시장위험 및
개별위험</td><td>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
<tr><td>주식가격
변동위험</td><td>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td></tr>
<tr><td>이자율
변동위험</td><td>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td><td>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td></tr>
<tr><td>파생상품투자
위험</td><td>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td></tr>
</table>
</td></tr>
<tr><td colspan="3">※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매입
방법</td><td>· 15시 30분 이전 : 제2영업일 기준가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 :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td><td rowspan="2">환매
방법</td><td rowspan="2">· 15시 30분 이전 : 제2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
· 15시 30분 경과 후 : 제3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td></tr>
<tr><td>환매
수수료</td><td>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 산정 방법
-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td></tr>
<tr><td>과세</td><td colspan="3">
수익자에 대한 과세
<table>
<tr><th colspan="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th></tr>
<tr><td>근거</td><td>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td></tr>
<tr><td>가입자격</td><td>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td></tr>
</table>
</td></tr>
</table>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매년 6.30.이전에 가입 시에는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입 가능함**
	가입기간	2015.12.31.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저축계약기간	10년 이상 *** 단 5년 이내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가입한도	연간 6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다만,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부과. 또한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다음 3개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내에서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를 변경(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유형	전환가능 집합투자기구
주식형	인덱스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주식형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혼합주식형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집합투자업자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대표전화 : 02-3771-7800, 홈페이지 : www.ubs-hana.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1좌단위 모집)
효력발생일	2020년 04월 02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 4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ubs-hana.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ubs-hana.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하나UBS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AP770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AP981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AP982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 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BJ953)

2.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 신탁)
- 전환형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가입자격 :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2 에 따른 가입대상자

3.모집예정금액

10 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방법 및 절차

: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하나UBS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AP770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AP981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AP982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사항
2014년 03월 17일	최초설정일
2014년 04월 15일	동일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추가, 전환일 문구 정정
2014년 06월 09일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조항 신설
2015년 02월 06일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사실 표기 및 일반법인 과세율 변경 표기
2015년 06월 30일	운용역 변경 (이창영 → 유지용)
2016년 07월 02일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년 07월 30일	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 및 환매 기준시간 변경
2017년 04월 04일	1)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위험등급 변경 2)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3) 모펀드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반영 4)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5)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8년 04월 06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9년 03월 29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2019년 09월 25일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2020년 02월 14일	모투자신탁 추가(하나UBS 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2020년 03월 11일	해지된 모투자신탁 (하나UBS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삭제
2020년 04월 02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금융투자) (대표전화: 02-3771-78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경력	주요운용 이력
책임	유지용	1968	부문장	23.9년	-외환은행 증권신탁부(2006.05.24~2010.10.31) -하나UBS자산운용 주식운용팀(2010.11.01~현재)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혼합주식형_국내, %)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유지용	1968	부문장	16개	586억원	-3.04	-11.83	-2.96	-9.94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 "책임운용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나.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운용역	운용기간
이창영	2014 년 03 월 17 일 ~ 2015 년 06 월 29 일
유지용	2015 년 06 월 30 일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자투자신탁), 전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90% 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주요투자대상	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
	투자목적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국내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여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라.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232 조에 의거한 전환형 투자신탁으로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음의 투자신탁 중 하나의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수(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전환이 불가능하고 전부전환만 가능하며, 전환수수료나 전환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펀드	내용
인덱스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을 KOSPI200 인덱스 수익을 추종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KOSPI 200 지수의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국내주식 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투자신탁재산의 50%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국내주식 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며, 50%이하를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①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2 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서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투자신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중 "**수익자에 대한 과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 UBS 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90% 이상**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
유동성자산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40% 이내로 하며, 이 경우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은 60% 이상)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이 투자신탁은 설정일부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합니다.

* '매일의 보유비율'을 의미하며 "모펀드의 해당 주식편입비율 × 자펀드의 모펀드 투자비율" 로 계산됩니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 호 내지 2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 1 호 내지 2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 하나 UBS 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1)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3.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시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으며,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회사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90% 이상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3)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수익률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한 초과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나 참고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추구
  -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추구
  -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구 분	Style	투 자 Horizon	매 매 형 태	주 식 편입비	세 부 내 용
기 본 포트폴리오 영 역	내재가치 우량주, 성장주 중심	1년	Buy & Hold	주식총액의 70% 수준	-모델(애널리스트)포트폴리오를 근간으로 장기적 관점의 포트폴리오 구성 -장기적 성장 잠재력, 해당산업의 Life cycle, 시장지배력, 기업지배구조 등 감안 -안정적인 초과수익률 달성과 주가차별화 양상 감안하여 내재가치우량주 및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매매회전율을 가급적 줄이고 기본적으로 Buy & Hold의 매매패턴 견지
전 술 적 자산 배분 영 역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고배당주, 시장테마주 등	중단기 (~6개월)	Short-term Trading	주식총액의 0~30% 수준	-시장 흐름 변화에 대응, 탄력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본적으로 상승국면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하락국면 전환 예상시 매도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테마주 등 선제적 대응 등 적극적인 매매패턴 구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나.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주식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하여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라.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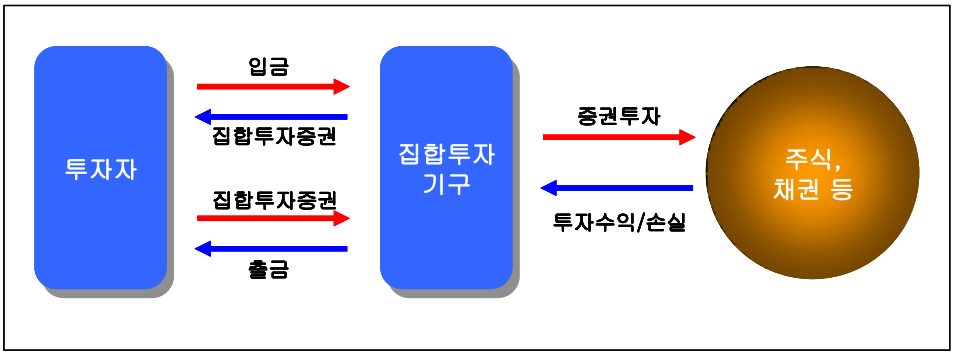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고 있는 **모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특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기타 투자위험 등 :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가. 일반위험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 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투자전략 실행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의도했던 투자전략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일 환매 예상금액과 실제 수령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 혹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오류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업무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허용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할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위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 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리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 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6.10%**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종류 C-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2) **오후 3 시 30 분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T+2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나 수익증권 매입시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 **오후 3시30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1일		T+3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2) **오후 3시30분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2일	T+3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환매시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나 수익증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4)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전환청구 시 수익증권 일부에 대한 전환은 불가하므로,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전환청구만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수수료나 전환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1) 하나UBS 인덱스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하나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3) 하나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2) 위에서 열거한 투자신탁 이외의 다른 투자신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약관의 변경의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합니다.

(4)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5)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시30분** 이전까지로 하되, **15시30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전환전 투자신탁	전환후 투자신탁	전환전 투자신탁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전환후 투자신탁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영업일
		15시30분 이전	15시30분 경과후	15시30분 이전	15시30분 경과후	

인덱스장기소득공제 [주식]	타투자신탁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코리아장기소득공제 [주식]	타투자신탁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코리아장기소득공제 [주식혼합]	타투자신탁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 투자신탁간의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후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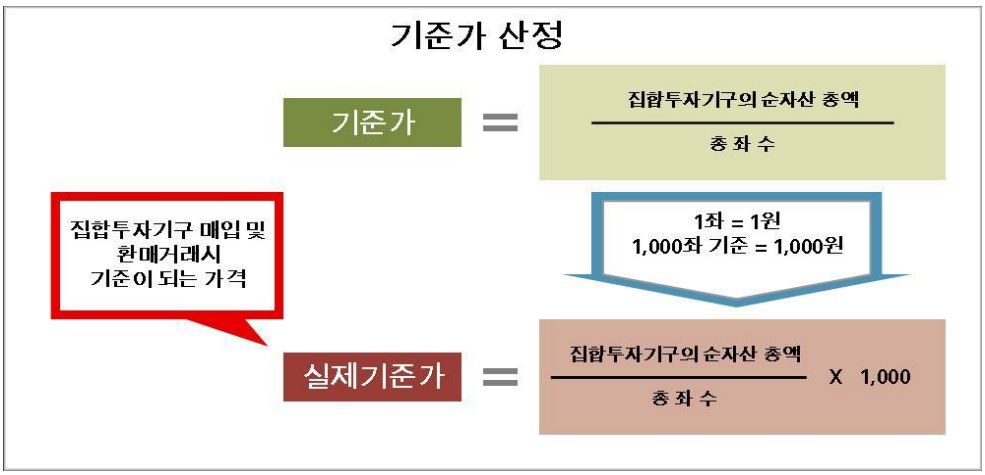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 중 낮은 가격
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형 명칭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상기의 수수료율 이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증권거래비용 주4)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500	0.800	0.030	0.015	**1.345**	0.000	**1.345**	1.44	0.838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500	0.350	0.030	0.015	**0.895**	0.000	**0.895**	0.96	0.857
지급시기		3 개월 후급, 신탁의 전부해지 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2019.03.17~2020.03.16)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19.03.17~2020.03.16)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1,000 원)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종류형 명칭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138	283	435	762	1,734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92	188	289	507	1,154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7년 04월 04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가입자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매년 6.30. 이전에 가입 시에는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입 가능함**
가입기간	2015.12.31.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저축계약기간	10년 이상 *** 단 5년 이내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가입한도	연간 6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다만,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부과. 또한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감면세액추징	가입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증가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

	을 추징하지 아니함 1.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2.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주민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4기(2017.03.17 ~ 2018.03.16)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5기(2018.03.17 ~ 2019.03.16)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6기(2019.03.17 ~ 2020.03.16)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 1) 법시행령 제 264 조(회계감사 적용면제)에 의거하여 동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이 300 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에서 적용 면제되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항 목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20.03.16	2019.03.16	2018.03.16
운용자산	177,904,327	221,912,581	229,881,536
유가증권	175,631,866	221,554,692	227,058,677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272,461	357,889	2,822,859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913	212	54,025
자산총계	177,905,240	221,912,793	229,935,56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0	0	3,634,078
부채총계	0	0	3,634,078
원본	231,054,542	238,890,073	200,941,628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53,149,302	-16,977,280	25,359,855
자본총계	177,905,240	221,912,793	226,301,483
운용수익	-36,416,549	-42,436,352	27,855,329

이자수익	11,887	14,394	25,409
배당수익	0	0	3,795,114
매매평가차손익	-36,428,436	-42,450,746	24,034,806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	-36,416,549	-42,436,352	27,855,329
매매회전율	0	0	0

나. 대차대조표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20.03.16	2019.03.16	2018.03.16
운용자산	177,904,327	221,912,581	229,881,536
현금및예치금	2,272,461	357,889	2,822,859
현금및현금성자산	2,272,461	357,889	2,822,859
유가증권	175,631,866	221,554,692	227,058,677
수익증권	175,631,866	221,554,692	227,058,677
기타자산	913	212	54,025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0	52,606
미수이자	913	212	1,419
자 산 총 계	177,905,240	221,912,793	229,935,561
기타부채	0	0	3,634,078
해지미지급금	0	0	53,138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3,580,940
부 채 총 계	0	0	3,634,078
원 본	231,054,542	238,890,073	200,941,628
이익잉여금	-53,149,302	-16,977,280	25,359,855
자 본 총 계	177,905,240	221,912,793	226,301,483
부채 및 자본 총계	177,905,240	221,912,793	229,935,561

총좌수	231,054,542	238,890,073	200,941,628
기준가격	769.97	928.93	1126.21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6 기 2019.03.17 ~ 2020.03.16	제 5 기 2018.03.17 ~ 2019.03.16	제 4 기 2017.03.17 ~ 2018.03.16
운용수익(운용손실)	-36,416,549	-42,436,352	27,855,329
투자수익	11,887	14,394	3,820,523
이자수익	11,887	14,394	25,409
배당금수익	0	0	3,795,114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3,428,858	4,707,491	24,952,307
지분증권매매차익	13,428,858	71,453	4,394,900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20,557,407
채무증권평가차익	0	4,636,038	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49,857,294	47,158,237	917,501
지분증권매매차손	821,699	1,373,510	917,501
채무증권평가차손	49,035,595	45,784,727	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36,416,549	-42,436,352	27,855,329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148.43	-192.42	141.50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03/17~2018/03/16	191	191	52	57	43	47	201	230
2018/03/17~2019/03/16	201	226	52	52	14	14	239	222
2019/03/17~2020/03/16	239	222	46	42	54	49	231	178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종류형펀드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Class C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03/17~2018/03/16	174	168	43	45	33	35	184	200
2018/03/17~2019/03/16	184	200	41	40	12	11	213	189
2019/03/17~2020/03/16	213	189	39	34	47	41	205	149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Class C-E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03/17~2018/03/16	25	24	11	11	9	10	27	29
2018/03/17~2019/03/16	27	29	10	9	0	0	36	32
2019/03/17~2020/03/16	36	32	9	8	6	6	39	29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1) 비교지수: **KOSPI 수익률 X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기준)

(기준일 : 2020년 03월 16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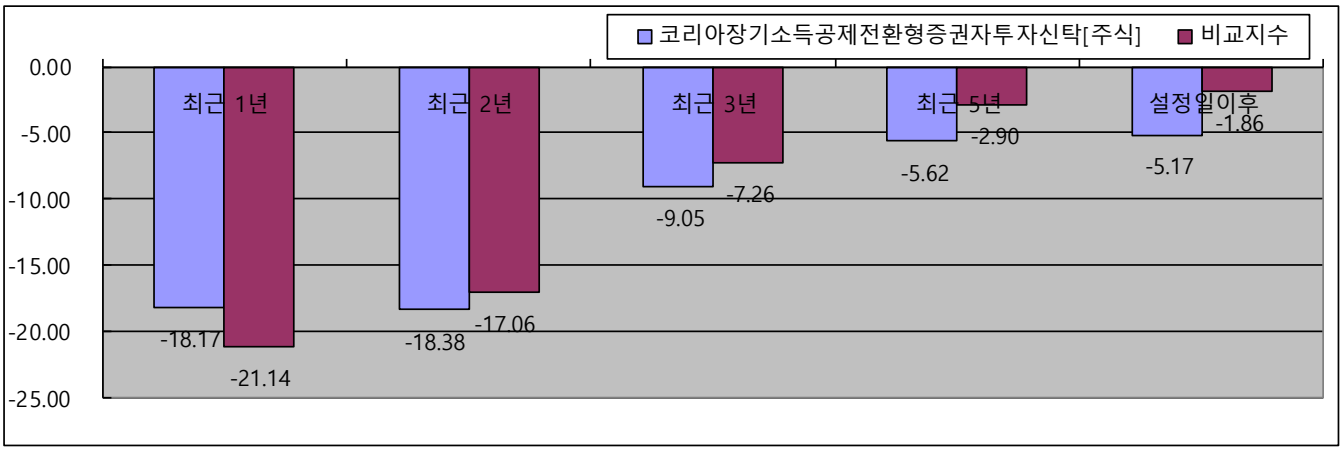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19/03/17 ~ 2020/03/16	2018/03/17 ~ 2020/03/16	2017/03/17 ~ 2020/03/16	2015/03/17 ~ 2020/03/16	(%)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4-03-17	-18.17	-18.38	-9.05	-5.62	-5.17
비교지수	2014-03-17	-21.14	-17.06	-7.26	-2.90	-1.86
수익률 변동성(%)	2014-03-17	21.03	17.31	16.10	14.59	13.82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Class C	2014-03-17	-18.24	-18.44	-9.11	-5.67	-5.21
비교지수	2014-03-17	-21.14	-17.06	-7.26	-2.90	-1.86
수익률 변동성(%)	2014-03-17	21.03	17.31	16.10	14.59	13.82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Class C-E	2014-04-30	-17.85	-18.06	-8.69	-5.24	-5.24
비교지수	2014-04-30	-21.14	-17.06	-7.26	-2.90	-2.29
수익률 변동성(%)	2014-04-30	21.02	17.30	16.09	14.59	13.90

*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기준일 : 2020년 03월 16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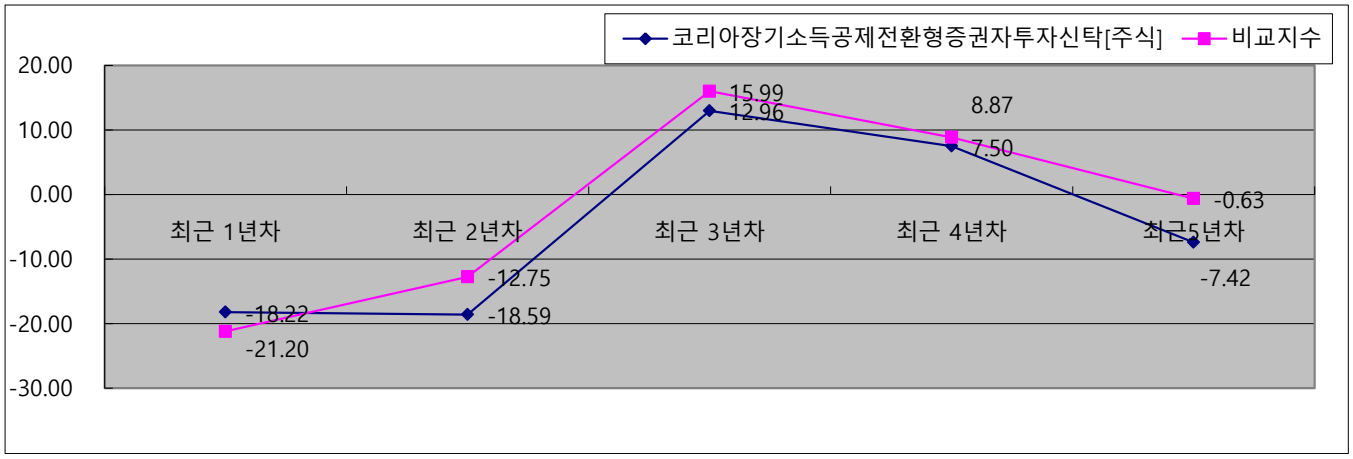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19/03/17 ~ 2020/03/16	2018/03/17 ~ 2019/03/16	2017/03/17 ~ 2018/03/16	2016/03/17 ~ 2017/03/16	2015/03/17 ~ 2016/03/16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4-03-17	-18.22	-18.59	12.96	7.50	-7.42
비교지수	2014-03-17	-21.20	-12.75	15.99	8.87	-0.63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Class C	2014-03-17	-18.28	-18.64	12.89	7.45	-7.44
비교지수	2014-03-17	-21.20	-12.75	15.99	8.87	-0.63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Class C-E	2014-04-30	-17.89	-18.26	13.40	7.94	-7.00
비교지수	2014-04-30	-21.20	-12.75	15.99	8.87	-0.63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0년 03월 16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대한민국	0	0	0	176	0	0	0	0	0	2	0	178
	(0.00)	(0.00)	(0.00)	(98.72)	(0.00)	(0.00)	(0.00)	(0.00)	(0.00)	(1.28)	(0.00)	(100.00)
자산합계	0	0	0	176	0	0	0	0	0	2	0	178
	(0.00)	(0.00)	(0.00)	(98.72)	(0.00)	(0.00)	(0.00)	(0.00)	(0.00)	(1.28)	(0.00)	(100.00)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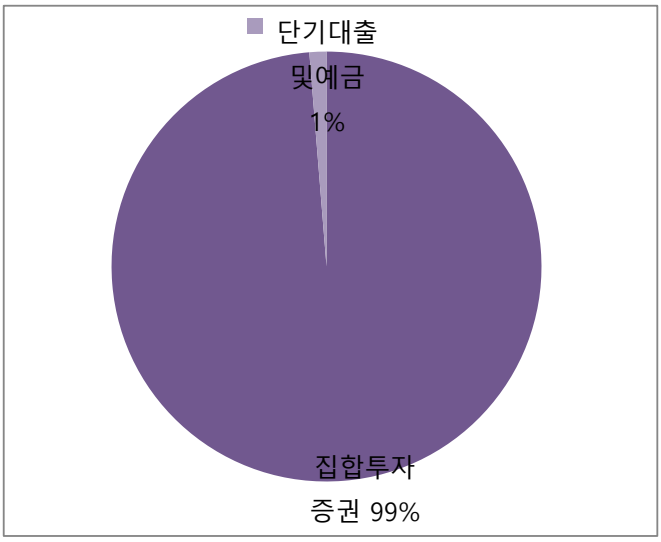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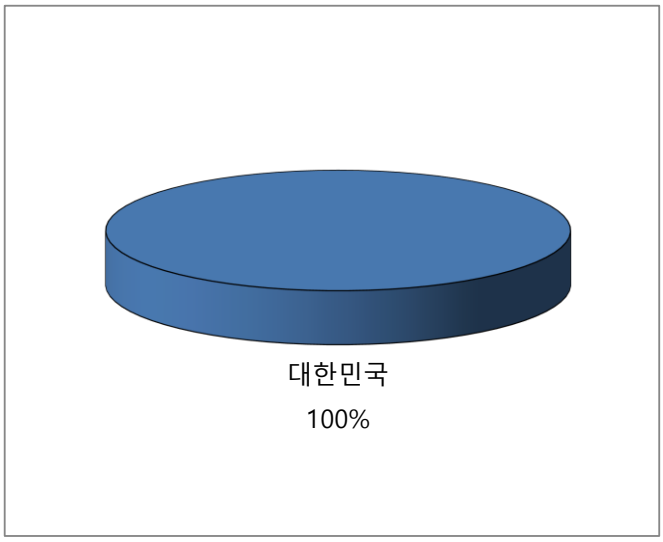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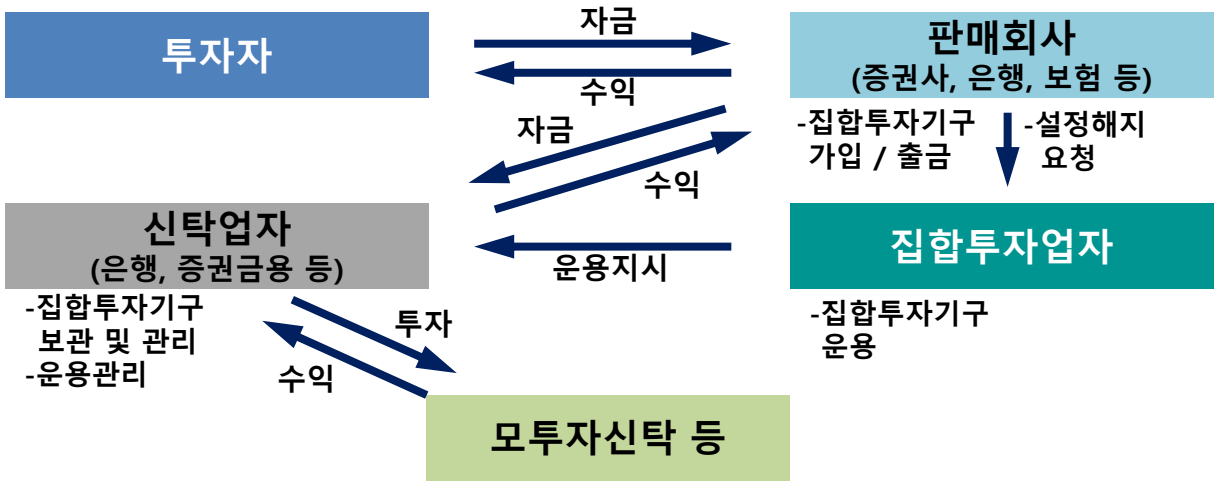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금융투자빌딩) (02-3771-7800, www.ubs-hana.com)
회사연혁	1968.12.16 한국투자공사 설립 1970. 5.20 한국투자공사 증권투자신탁업무 시작 1977. 2.14 한국투자공사 대한투자신탁과 증권감독원으로 분리 2000. 6. 4 증권사 전환으로 대한투자신탁증권㈜로 사명 변경 2000. 6.27 대한투자신탁운용㈜ 설립(대한투자증권㈜ 전액출자 2000. 7. 1 영업개시 2007.7.27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자본금	450 억
주요주주현황	UBS AG, 하나금융투자㈜

나. 주요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기타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한 사항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19.12.31	18.12.31	항 목	19.12.31	18.12.31
현금및예치금	109,454	68,158	영업수익	29,026	31,183
유가증권및대출채권	1,850	1,820	영업비용	17,085	17,306
유형자산및기타자산	7,668	6,813	**영업이익**	**11,941**	**13,877**
자산총계	**118,972**	**76,791**	영업외수익	22	1
기타부채등	4,025	4,138	영업외비용	23	24
예수부채	42,545	-	-	-	-
부채총계	**46,570**	**4,138**	**경상이익**	**11,940**	**13,854**
자본금	45,000	45,000	특별이익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45	446	특별손실	-	-
이익잉여금	26,958	27,206	법인세	2,679	3,078
자본총계	**118,972**	**72,653**	**당기순이익**	**9,261**	**10,776**

라. 운용자산규모(2020년 01월 31일 기준 / 단위 : 억원)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MMF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총 계
18,071	7,553	21,621	11,929	158,063	11,551	660	4,564	8,779	242,790

※ 위 수치는 일임계약 금액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2.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 2 가) (TEL : 02-2073-7114)
홈페이지	www.kbstar.com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 의 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1 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5.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7.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의 여부

-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다동) (Tel : 6714-4615)
홈페이지	www.hanais.co.kr

(2) 주요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한국자산평가	(110-7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98-5) 삼환빌딩 4 층 (02)2251-1300 -http://www.koreaap.com -설립일: 2000.05.29 / 등록일: 2000.07.01 -자본금: 50 억원
NICE 피앤아이	(150-9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여의도동) (02)398-3900 -http://www.nicepni.com/ -설립일: 2000.06.16 / 등록일: 2004.06.29 -자본금: 55.5 억원
KIS 채권평가	(150-8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8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 층 (02)3215-1400 -http://www.bond.co.kr -설립일: 2000.06.20 / 등록일: 2004.06.29 -자본금: 30 억원
에프앤자산평가	(110-7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 길 29 (인사동) 태화빌딩 4 층 (02) 721-5300 - http://www.fnpricing.com/ -설립일: 2011.06.09 / 등록일: 2011.9.23 -자본금: 50 억원

(2)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3)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 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 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공시 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투자증권거래>	①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선정절차 1. 정기적인 중개회사 평가를 통해 중개회사와 중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 2. 운용 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다. 3.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른다. 4.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한다. 5.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6.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다. 단, 블록트레이딩(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 1.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 3.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6.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